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하이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하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 71157)							
(종류) 클래스	A	C	S	C-F	C-E	C-P	C-W	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1158	71159	AP204	A3715	AT276	AY268	AZ337	B0096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 하이자산운용(주) (02-727-2700)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8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9월 3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각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채권에 90% 이하,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상품으로, 우량 채권 등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향후 높은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 운용전략

주식에의 투자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종목 중 당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군을 기본 투자 POOL로 정합니다.

이 중 향후 높은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종목별 비중은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을 참고하여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는 신용등급이 우량 채권 및 CP, CD 등에 투자 합니다.

나. 세부 운용전략

(1) 채권운용전략

- 국공채, 통안채, 우량 은행채권 및 CD 편입으로 Carry 및 롤링효과 추구
: 목표 듀레이션 0.8 ~ 1.2년 (1.0년 ± 0.2년)
- 신용위험 최소화 : 국공채 및 우량 은행채권 및 CD 위주로 자산 구성
- 저평가 채권(종류별/만기별) 발굴 및 매수로 안정적 수익 확보
- 펀드 듀레이션의 시의 적절한 조정을 통한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2) 주식 운용전략

- 자산배분전략 : 마켓타이밍 전략 최소화 (신탁계약서 대비 평균 95% 내외 유지)
- 섹터별 배분은 기업의 이익 창출 사이클을 활용하여 시행
-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EMC Model & EES System과 자체 리서치 결과를 참고하여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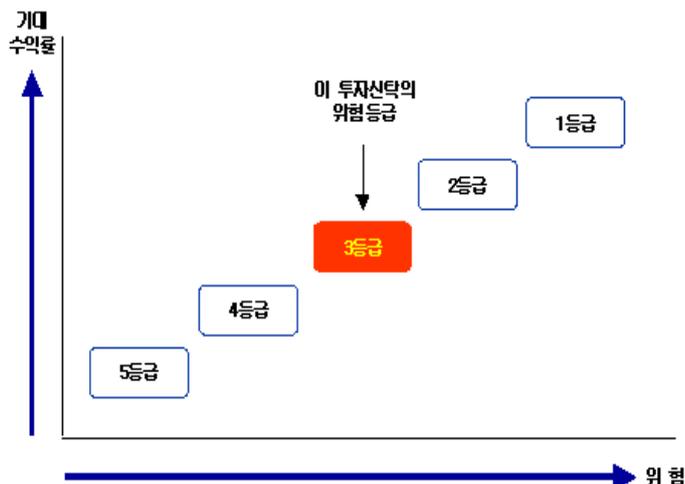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27% + KOB120 73%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p>시장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특히 이 투자신탁은 채권 고평입 상품으로 채권 및 어음 발행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이자율 변동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 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 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포트폴리오 집중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향후 높은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p>	<p>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p>
<p>운용실적 위험</p>	<p>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우량채권 등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되,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주식 및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이자산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5.8.31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주식	책임	이석원	1969	본부장	31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131억좌	고려대 경제학 / 경영대학원 ING자산운용(8.5년) 이스타투자자문(0.8년) 한셋투자자문(1년) 미래에셋자산운용(1.5년) KB자산운용(5.3년)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1.12~)
	부책임	박정원	1974	팀장	9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769억좌	성균관대 무역학과 우리투자증권(99.02~08.07) GS자산운용 주식운용팀(08.07~10.08)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팀장 (10.08~13.07) 현 하이자산운용 성장운용팀
채권	책임	조주현	1968	팀장	59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5,263억좌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제일투신운용 리스크관리팀(리스크관리) 현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14.08.27~ 15.08.26)	(13.08.27~ 14.08.26)	(12.08.27~ 13.08.26)	(11.08.27~ 12.08.26)	(10.08.27~ 11.08.26)

운용펀드	7.25	13.21	2.61	3.34	5.19
비교지수	-0.21	4.98	1.88	5.89	3.8
	(14.08.27~ 15.08.26)	(13.08.27~ 14.08.26)	(12.08.27~ 13.08.26)	(11.08.27~ 12.08.26)	(10.08.27~ 11.08.26)
종류 A	6.14	12.04	1.54	2.26	4.1
비교지수	-0.21	4.98	1.88	5.89	3.8
	(14.08.27~ 15.08.26)	(13.08.27~ 14.08.26)	(12.08.27~ 13.08.26)	(11.08.27~ 12.08.26)	(10.08.27~ 11.08.26)
종류 C	5.78	11.65	1.16	1.84	3.64
비교지수	-0.21	4.98	1.88	5.89	3.8
	(14.08.27~ 15.08.26)				
종류 S	6.46				
비교지수	-0.21				
	(14.08.27~ 15.08.26)				
종류 C-F	-4.94				
비교지수	-0.21				
	(14.08.27~ 15.08.26)				
종류 C-E	6.25				
비교지수	-0.21				
	(15.01.29~ 15.08.26)				
종류 C-P	2.43				
비교지수	0.18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A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	제한없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p>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다.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p>
C-E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C-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 또는 특정금전신탁인 경우
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기타비용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수익증권의현물발행비용 등
C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S	-	3년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0.15% 이내		
C-F	-	-		
C-E	-	-		
C-P(퇴직연금)	-	-	없음	
C-W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C-P2(개인연금)	-	-	없음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 시	환매 시	발생 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종류)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증권 거래 비용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 관리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		
A	0.45	0.55	0.03	0.02	0.0023	1.0523	1.0586	0.2345	
C	최초설정일~2010.05.02	0.45	1.05	0.03	0.02	0.0	1.5500	1.5500	-
	2010.05.03~2011.05.02	0.45	1.012	0.03	0.02	0.0	1.5120	1.5120	-
	2011.05.03~2012.05.02	0.45	0.975	0.03	0.02	0.0	1.4750	1.4750	-
	2012.05.03~2013.05.02	0.45	0.937	0.03	0.02	0.0	1.4370	1.4370	-
	2013.05.03~신탁계약해지	0.45	0.9	0.03	0.02	0.0023	1.4023	1.409	0.2345
S	0.45	0.25	0.03	0.02	0.002	0.752	0.7579	0.2345	
C-F	0.45	0.03	0.03	0.02	0.0024	0.5324	0.5394	0.2345	
C-E	0.45	0.45	0.03	0.02	0.0022	0.9522	0.9581	0.2345	

C-P(퇴직연금)	0.45	0.5	0.03	0.02	0.0	1.0	1.0056	0.2345
C-W	0.45	0.0	0.03	0.02	0.0022	0.5022	0.5077	0.2345
C-P2(개인연금)	0.45	0.65	0.03	0.02	0.0022	1.1522	1.1577	0.2345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7-04~2015-07-03]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14-07-04~2015-07-03]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5) 종류 C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2010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1년 단위로 변경되며, 이에 연동되어 총보수·비용 비율도 변경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구분	가입 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A	49	158	391	649	1,414
C	-	144	455	798	1,816
S	-	77	244	429	977
C-F	-	55	174	305	695
C-E	-	98	309	542	1,235
C-P	-	103	324	569	1,296
C-W	-	52	164	287	645
C-P2	-	118	374	655	1,492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등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등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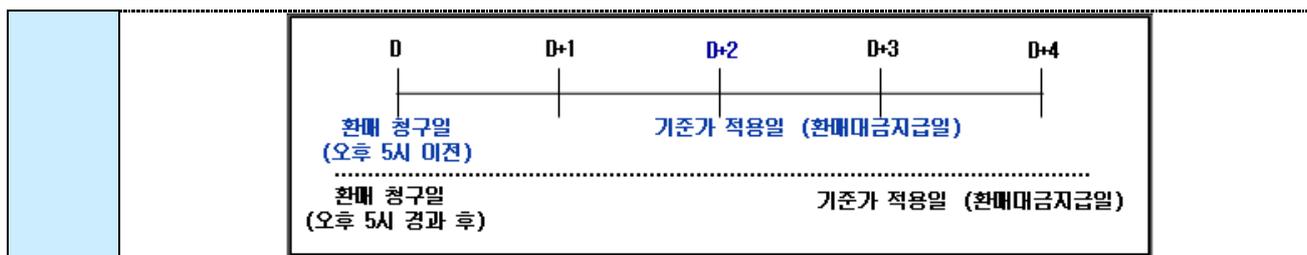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매입·환매 절차

구분	17시(오후 5시) 이전	17시(오후 5시)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환매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8기	제7기	제6기
	2015-07-03	2014-07-03	2013-07-03
운용자산	349,857,261,653	32,402,472,320	4,114,165,520
증권	322,828,972,493	28,233,185,063	3,392,410,519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1,028,289,160	869,287,257	721,755,001
기타 운용자산	26,000,000,000	3,300,000,000	
기타자산	3,448,845,193	343,410,724	64,748,791
자산총계	353,306,106,846	32,745,883,044	4,178,914,311
운용부채			
기타부채	12,716,540,472	537,028,173	14,419,996
부채총계	12,716,540,472	537,028,173	14,419,996
원본	213,861,792,115	22,826,448,750	3,313,001,262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26,727,774,259	9,382,406,121	851,493,053
자본총계	340,589,566,374	32,208,854,871	4,164,494,315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8기	제7기	제6기
	2014-07-04~ 2015-07-03	2013-07-04~ 2014-07-03	2012-07-04~ 2013-07-03
운용수익	19,255,825,363	926,661,292	369,660,600
이자수익	2,831,205,934	204,071,950	205,979,502
배당수익	228,536,293	20,177,950	44,601,853
매매/평가차익(손)	16,165,424,871	702,395,125	119,072,714

기타 수익	30,658,265	16,267	6,531
운용비용	337,965,064	53,451,875	25,757,391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31,294,612	1,868,250	310,919
기타 비용	306,670,452	51,583,625	25,446,472
당기순이익	18,917,860,299	873,209,417	343,903,209
매매회전율(%)	266	642	366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